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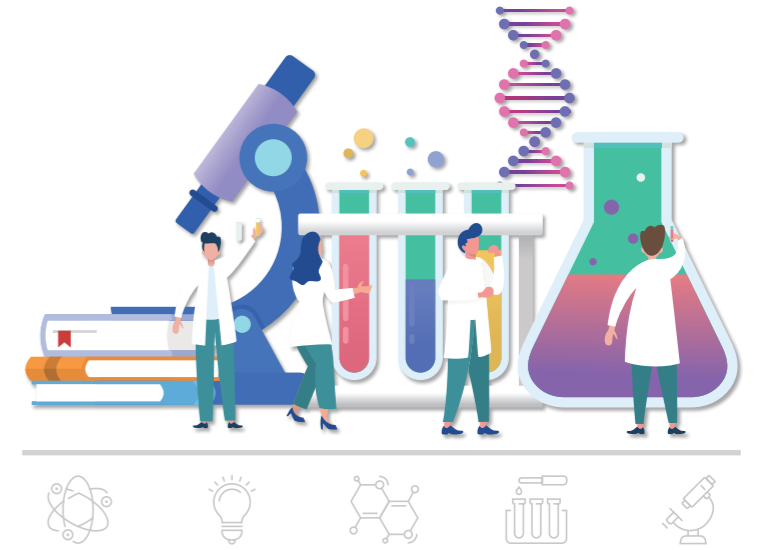


중소기업 연구인력의 인건비를 지원해 드립니다!



1. 신진 연구인력 채용지원

중소기업의 연구인력 부족 현상을 해소하고 청년층 일자리 창출에 기여합니다.




지원대상

기업
기업부설 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중소기업

인력
이공계 학·석·박사 학위 취득 후 5년 이내자
(당해 연도 학위 취득 예정자 포함)
※ 기업·인력의 조건 모두 만족 시 신청 가능


**지원조건 및
지원내용**

지원조건
신청대상 인력을 기업부설연구소(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에 배치하여 연구전담요원으로 활용

지원내용
• 기업별 2명, 최대 3년, 기준연봉의 50%지원

구분	기준연봉			정부지원금		
	1년차	2년차	3년차	1년차	2년차	3년차
학사	2,700만원	3,000만원	3,300만원	1,350만원	1,500만원	1,650만원
석사	3,600만원	4,000만원	4,400만원	1,800만원	2,000만원	2,200만원
박사	4,500만원	5,000만원	5,500만원	2,250만원	2,500만원	2,750만원


우대사항

기업(기업 최대 5점)
벤처기업(3점), 지방기업(3점), 계속고용기업(2점)

인력(인력 최대 5점)
여성(3점), R&D산업인턴 연계취업자(3점),
내일채움공제 가입인력(2점)

※ 우선지원 : 연구인력 양성·채용 패키지 지원을 위한 사업간 연계제도를 도입하여 「기업연계형 연구개발인력양성사업」 석·박사 인력이 중소기업 취업 후 신청 시 우선 선정


문의처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기술인력지원팀
(02)3460-9171, 9172, 9082, 9090, 9130, 9125

2. 고경력 연구인력 채용지원

중소기업의 연구인력 부족 현상을 해소하고 기업의 기술 개발 역량을 향상시킵니다.



지원대상

기업

기업부설 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중소기업

인력

이공계 학·석·박사 학위 취득 후, 기업·공공연구기관·대학 등에서 연구경력이 학사 10년, 석사 7년, 박사 3년 이상인 자

※ 기업·인력의 조건 모두 만족 시 신청 가능



지원조건 및 지원내용

지원조건

신청대상 인력을 기업부설연구소(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에 배치하여 연구전담요원으로 활용

지원내용

- 지원인력 계약연봉의 50% ▷ (최대 5,000만원/년) 정부지원 (계약연봉의 제한 없음)
- 기업별 1명, 최대 3년, 계약연봉의 50%지원



우대사항

기업(기업 최대 5점)

벤처기업(3점), 지방기업(3점), 계속고용기업(2점)

인력(인력 최대 5점)

여성(3점), 내일채움공제 가입인력(2점)



문의처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기술인력지원팀

(02)3460-9167, 9088, 9123, 9083

3. 공공연 연구인력 파견지원

공공연구기관의 고급 인력파견을 통해 기술 노하우를 전수하고 R&D수행을 지원합니다.



신청대상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벤처기업



지원조건 및 지원내용

지원조건

지원인력을 해당 기업부설연구소에 배치하여 기술개발/기술기획/기술관리의 업무를 수행

지원내용

- 기업별 1명, 최대 3년 이내 (1회에 한하여 최대 3년 연장 가능)
- 파견 공공연구기관 표준급여의 50% 지원

구분	표준급여	정부지원금
기업파견 최초 3년	파견 전 원소속기관에서	표준급여의 50%(한도 제한 없음)
추가연장 3년*	지급받는 연봉	표준급여의 40%(한도 제한 없음)

* 파견인력을 기업소속 정규직으로 채용한 경우 3년 연장 가능



우대사항

지방기업(3점), 계속고용기업(2점)



문의처

국가과학기술연구회 기업지원팀
(044)287-7386, 7382, 7388

(공통) 신청기업 자격 제한 요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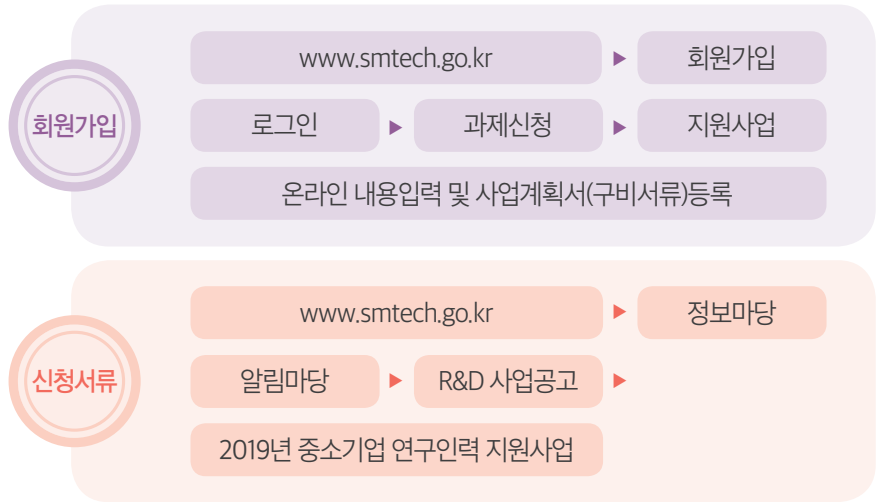
1. 신청기업, 대표자, 지원인력이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2. 접수마감일 현재 신청기업, 대표자, 지원인력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① 기업의 부도
 - ②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③ 채무불이행자(민사집행법에 기하여 등재되거나, 신용정보집중기관에 등록된 경우)
 - ④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
 - ⑤ 최근 2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 (단,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3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 미적용)
 - ⑥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 ⑦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중소기업 연구인력 지원사업 신청 접수



신청방법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otech.go.kr)을 통해 온라인 접수 (오프라인 서류 제출 불필요)



온라인 신청절차 및 접수요령

